



조례안 검토보고서

○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도지사 제출안)

2022. 9. 26.(월)

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

(수석전문위원 원공식)

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원공식

의안번호 1번 「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2022. 7. 1.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. 7. 5.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.

I. 제안이유

-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 중인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의 이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.

II. 주요내용

- 가. 시설 이용료 산정 및 감면·반환기준을 정함(안 제28조의2 신설)
- 나. 체육시설, 숙소, 강의실 등 이용료 산정과 감면·반환 세부기준(별표 신설)

III. 절차 이행

가.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

- 입 법 예 고 : 의견 없음
- 입 법 예 고
 - 예고기간 : 2022. 5. 4.(수) ~ 5. 24.(화) (20일간)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부 서 협 의

- 협의기간 : 2022. 5. 4.(수) ~ 5. 16.(월) (12일간)

- 협의결과

· 국어책임관 감수 : 반영

·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·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· 인권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· 규 제 심 사 : 해당사항 없음

○ 관계 중앙부처 :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

나. 비용추계

○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

IV. 검토의견

1. 주요 내용 검토

가. 개정취지와 필요성

-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‘경기미래교육캠퍼스’ 시설 이용자의 이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에 대한 조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(사용료) 및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기존 ‘경기미래교육캠퍼스’ 이용자의 이용료는 「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」 제24조(운영규정) “조례와 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” 에 근거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‘경기도 위탁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시행 규칙’ 에 따라 징수되었음.
-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「행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“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” 고 규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(사용료)는 “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” 고 규정하고 있으며 ‘공공시설’ 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행정기관과 이용자 (도민) 간 공물에 대한 사용 관계로서 공법적 관계가 적용되기에,

- 동법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)에서 관련된 사항을 ‘조례’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, ‘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이용료’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- 본 개정안을 통해 ‘경기미래교육캠퍼스 사용료’ 관련 주요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도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 및 법률적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이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향하는 ‘주권재민의 지방자치 시대로의 전환’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음.
- 아울러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제5항에서는 ‘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임무’를 명시하고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는 ‘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’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‘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이용료’에 대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 됨.

나. 개별 조문 검토

- ‘안 제28조의2(캠퍼스 이용료)’는 현재 「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」 제24조(운영규정)에 근거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‘경기도 위탁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’에 따라 캠퍼스 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고 있는 현행 이용료 기준을 준용하여 제시하고,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내 공공시설의 직접 이용에 대한 ‘이용료 감면 및 반환기준’을 위탁운영 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제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.

- (‘이용료의 범위’ 에 대한 검토) 안 제28조의2 규정의 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강습료 등이 제외된 캠퍼스 시설의 직접 이용 비용에 한정되어 있어 강습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료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됨.
- 이에,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에 규정된 ‘사용료’ 의 범위가 단순히 이용료만을 언급하는 것인지, 강습료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, 행정안전부는 아래와 같이 “본 조항의 ‘사용료’ 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징수에 해당하고, ‘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강습료’ 가 본 규정상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어렵다” 고 회신하였음.

[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: 「지방자치법」 153조(사용료) 유권해석 中]

「지방자치법」 153조의 사용료는 ‘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징수’에 해당합니다.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‘강습료’를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는 판단이 어렵고, 평생교육법 등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- 그렇다면,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강습료 등을 제외하고 ‘공공 시설의 이용’ 에 대한 비용에 한정하는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,
- 다만, 현행 ‘경기도 위탁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’ 중 시설 이용료에 명시된 각종 이용료 중 ‘헬스장 이용료’ 가 개정안 별표에 누락되어 있으므로(생각건대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상의 불비라고 판단됨)¹⁾, 개정안 별표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.

※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수정(안)은 ‘붙임1’ 과 같이 제안함.

1) '입법불비(立法不備)'란, 법과 제도로 명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함.

- (공연장 환급기준) 개정안 별표에 ‘공연장 환급기준’ 으로 제시한 ‘이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취소’ 는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.

2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에 근거하여 ‘공공시설’에 대한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행정기관과 이용자(도민) 간 공물에 대한 사용 관계로서 공법적 관계가 적용되기에 동법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)에 근거하여 ‘조례’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경기도 조례 제 호

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캠퍼스 이용료) 캠퍼스 이용료 산정 및 감면·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시설 이용료 산정 및 감면·반환 기준(제28조의2 관련)

1. 이용료 산정 기준

가. 체육시설 이용료

(단위: 원)

이용시설	이용시간	체육경기(1시간)		일반행사(2시간)	
		평 일	주 말	평 일	주 말
실내체육관	주간(09시~18시)	15,000	20,000	100,000	150,000
	야간(18시~22시)				
인조잔디구장	주간(09시~18시)	15,000	20,000	100,000	150,000
	야간(18시~22시)	15,000	20,000	150,000	200,000

비 고

1. 부과 단위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정산한다.
2. 운영시간: 평일 09시~22시 / 주말 09시~22시
* 양평캠퍼스 인조잔디구장은 평일·주말 주간(09시~18시)만 운영
3. 주말은 토요일, 일요일을 말하고 법정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.

나.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

(단위: 원)

구분		이용	성인	청소년	어린이
수영장	파주캠퍼스(실내)	월 자유이용	50,000	40,000	35,000
		1일 자유이용	3,500	3,000	2,500
	양평캠퍼스(실외)	1일 자유이용	5,000	4,000	3,000
헬스장	파주캠퍼스	월 자유이용	50,000	40,000	-
		1일 자유이용	5,000	4,000	-

비 고

1. 운영시간
- 파주캠퍼스: 월~금 06시~21시 / 토 09시~18시
- 양평캠퍼스: 월~토 10시~17시(7월~8월)
2. 일요일, 법정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.
3. 20명 이상의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20%를 감면한다.
4. 입소교육생은 이용료를 면제한다.

다. 공연장 이용료

(단위: 원)

이용시간	평 일(4시간)	주 말(4시간)
주간 (09시~18시) 야간 (18시~22시)	500,000	600,000
심야 (22시~08시)	600,000	720,000

비 고

1. 부과 단위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정산한다.
2. 본공연 행사를 위한 준비, 연습, 철거 시간은 이용료의 50%를 감면한다.
3. 이용시간은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시간을 말한다.
4. 기본 무대, 조명, 음향, 부대시설, 분장실은 무료 제공하되 기술인력은 지원하지 않는다.
5. 주말은 토요일, 일요일을 말하고 법정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.

라. 강의실 이용료

(단위: 원)

구 분	이 용 료	비 고
소강의실 (15인~30인)	100,000	4시간
	50,000	2시간
중강의실 (31인~60인)	150,000	4시간
	75,000	2시간
대강의실 (61인~100인)	200,000	4시간
	100,000	2시간
세미나실 (150인)	300,000	4시간
	150,000	2시간

비 고

1. 일부 시간만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
2. 심야시간(22시~08시)은 1.5배를 더하여 적용한다.

마. 숙소 이용료

(단위: 원)

구 분		이용료	비 고
파주캠퍼스	6인실	50,000	1박 기준
	4인실	40,000	
	2인실	30,000	
양평캠퍼스	6인실 (게스트하우스 독채)	90,000	
	6인실 (스튜디오)	70,000	
	4인실	50,000	

바. 상업촬영 장소 이용료

(단위: 원)

이용시간	구 분	주 간(1시간)	야 간(1시간)
주간(06시~18시) 야간(18시~06시)	광고(CF)	1,000,000	1,500,000
	영화, 뮤직비디오, 홍보영상, 드라마	400,000	600,000
	정사진	200,000	300,000

비 고

1. 운영시간: 주간 06시~18시 / 야간 18시~06시
2.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
3. 기타촬영[동호회, 이미지, 유시시(UCC) 등]은 정사진 촬영 일람표에 준한다.
4. 시설 내 교육 및 행사상황에 따라 상업촬영이 제한될 수 있다.

2. 이용료 감면 기준

가. 면제기준

- 1) 국가 또는 경기도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인 경우
- 2)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이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·출연기관이 경기도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공연인 경우
- 3) 그 밖의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나. 감경기준

1) 제1호 가목, 나목, 라목 시설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30% 감경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(조손가정 포함) 30% 감경
- 「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0% 감경
- 「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30% 감경
- 다자녀 가정(세대원 중 1명에만 적용)이 이용하는 경우 20% 감경

2) 제1호 다목 시설

- 국가 또는 경기도가 후원하는 공연 또는 전시의 경우 50% 감경
- 경기도 및 진흥원과 협약관계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경우 50% 감경
- 장애인 관련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0% 감경
- 경기도 소재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가 이용할 경우 30% 감경

3) 국가유공자 등 50% 감경대상자 기준
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
4) 감경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경률이 가장 큰 것을 적용

3. 이용료 반환 기준 등

가. 체육시설, 강의실, 숙소

구 분	환급기준
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	이용료 전액 환급
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	이용료의 80% 환급
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	이용료의 50% 환급

나. 수영장, 헬스장

구 분	환급기준
등록 당일	이용료 전액 환급
월 자유이용료	전체 이용료의 10% 뺀 뒤 남은 날짜를 계산하여 적용

다. 공연장

구 분	환급기준
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이용이 불가능한 경우	이용료 전액 환급
이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	이용료의 50% 환급

※ 그 외의 경우에는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따른다.

라. 이용료 환불 시기

-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 신 설 ></u>	<u>제28조의2(캠퍼스 이용료) 캠퍼스 이용료 산정 및 감면·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.</u>